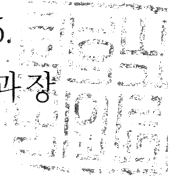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56
----------	------

제출일자 : 2023. 9. 5.

제 출 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이용료 감면에 있어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가정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달성문화센터 운영에 있어 변경된 사항 및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제1호 센터 시설의 정의에 ‘회의실’ 삭제
- 안 제5조제6호 ‘무료 순환버스 운영’의 삭제
- 안 제7조제1호 기본시설 대관의 범위에 ‘회의실’ 삭제
- 안 제9조의2에 감염병 환자, 타인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준사람, 기타 센터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사용·이용 제한 내용 신설
- 안 제13조제3항제2호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반환액 구체적 명시
- 안 [별표1] 사물함 이용 요금 구체적 명시 및 부속시설 사용료에 ‘회의실’ 삭제 등
- 안 [별표3] 사용료 등의 감면 항목 중 다자녀가정 이용료 감면 내용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1)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

(2)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참조

(2) 입법예고(2023. 8. 7. ~ 8. 27.)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따로 불임(※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회의실(전시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한다.

제5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 중 “회의실(전시실)”을 “전시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용·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센터 사용·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센터시설·장비 등을 파손·훼손하거나 센터를 사용·이용하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준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사용·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사용료 잔액 반환
별표 1과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 : 원)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일 입장 요금		
수영장	이용 요금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 초등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이용 요금	50,000													
사물함	이용 요금	1개월(2,000원) / 3개월(5,000원)													
비고		1. 부가가치세액(10%) 포함 2. 동일 단체 소속 1일입장 할인율 :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달성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중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중감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시간

구분	평일(월~금)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수영	06:00~22:00	06:00~18:00	09:00~18:00	전관휴관
헬스	06:00~22:00	06:00~18:00	09:00~18:00	
※ 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은 달성문화센터 내부규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시설사용료(대관시설)

가. 대관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공연장(백년홀)	오전	30,000	
	오후	50,000	
	야간	70,000	
삭제	-	-	
	-	-	
	-	-	
전시실(백년갤러리)	1일	30,000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5)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심야시간(22:00~익일08:00)의 시설사용은 “야간 요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함(3,4,5항 적용하지 않음)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설 비 명		기준	사용료	비고
피아노		1회	30,000	
무대조명		1회	25,000	
음향	유선마이크	1회	개당 5,000	
	무선마이크	1회	개당 1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CD 플레이어	1회	10,000	
무대시설	보면대	1회	10,000	
	의자	1회	10,000	
냉·난방	공연장	1회	80,000	
	전시실	1일	30,000	
	삭제	-	-	

-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2) 연습을 위한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 3) 소모품(건전지, CD, DVD, 테이프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 4) 보면대 및 의자는 10개 이상 사용 시 부과함.

【별표 3】

이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0%	
다자녀 가정(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5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이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 시설”이란 문화강좌실, 공연장, <u>회의실(전시공간)</u>, 수영장, 헬스장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 6. (생략) 제5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u>문화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u> 7. (생략) 제7조(대관의 범위)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u>회의실(전시실)</u> 등과 그 부속시설 2. (생략) <신설>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u>전시공간</u> ----- -----.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업무) (현행과 같음) 6. 삭제 7. (현행과 같음) 제7조(대관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기본시설 : 공연장, <u>전시실</u> 등과 그 부속시설 2.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사용·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센터 사용·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센터시설·장비 등을 파손·훼손하거나 센터를 사용·이용하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준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사용·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경우 : 100% 반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3. ~ 4. (생략)							하고 사용료 잔액 반환								
							3. ~ 4.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원)							(단위:원)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 로빅	1일 입장 요금	비고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 로빅	1일 입장 요금	비고
수영 장	이용 요금	생략					생략	수영 장	이용 요금	생략					생략
헬스 장	이용 요금	생략						헬스 장	이용 요금	생략					
사물 함	이용 요금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5,000원						사물 함	이용 요금	1개월(2,000원) / 3개월(5,000원)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달성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달성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시설 운영시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2) 시설사용료(대관시설)				2) 시설사용료(대관시설)			
가. 대관료				가. 대관료			
(단위 : 원)				(단위 : 원)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공연장(백년홀)	오전	30,000		공연장(백년홀)	오전	30,000	
	오후	50,000			오후	50,000	
	야간	70,000			야간	70,000	
회의실	오전	30,000		삭제	-	-	
	오후	30,000			-	-	
	야간	50,000			-	-	
전시실(백년갤러리)	1일	30,000		전시실(백년갤러리)	1일	30,000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3)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나. 부속시설 사용료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단위 : 원)			
설비명	기준	사용료	비고	설비명	기준	사용료	비고
피아노	생략			피아노	현행과 같음		
무대조명							
음향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빔프로젝트			
				CD플레이어			
무대시설				보면대			
				의자			
냉·난방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1회	40,000				
※ 생략				※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별표 3】		
사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이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구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구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다자녀 가정(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5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이내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이내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③ 별표 3 및 별표 4의 이용료(초과 이용료를 포함한다)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를 감경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5.7.30., 2018.5.21., 2019.2.28., 2021.12.10., 2022.6.30., 2023.4.10.>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7.30., 2016.10.31., 2018.5.21.>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라.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마.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바.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출산장려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출산장려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의 우대 시책

3. 출산 및 양육 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시책

4.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가정 시 공무원의 우대 시책

5. 양육지원서비스의 강화 방안

6. 모자보건지원의 확대 방안

7. 결혼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신설 2017.8.10.>

8. 그 밖에 출산장려지원 시책 <제7호에서 이동 (2017.8.10.)>

참고**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1. 비용 발생 관련 조문**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별표3”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가.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으로 인한 달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 이용료 할인 : 30,000원 × 100명 × 12월 = 36,000,000원

※ 달성문화센터 이용객 중 다자녀 가정의 이용객 수의 집계가
어려움에 따라 정확한 할인금액 산정 불가능

4. 작성자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석경목